

하나1Q코스닥150채권혼합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 EU878]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하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
1	2	3	4	5	6	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100% 이하로 국내 채권에 투자하며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 변동 위험,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는 액티브 ETF 투자위험, 국내 주식에 50% 미만 투자함에 따른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므로 다른 일반 ETF에 비해 추적오차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추적오차발생위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의 핵심 위험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하나1Q코스닥150채권혼합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국내 채권을 포함) 및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코스닥150 단기국공채 혼합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KRX)가 산출 및 발표하는 “코스닥150 단기국공채 혼합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1좌당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비교지수의 변동률을 원활하게 추종하는 가운데, 비교 지수 대비 일정 수준의 초과수익 창출을 추구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은 크게 두 부류로 구성되며, 투자대상자산 중 50% 미만은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에 주로 투자하고, 약 50% 수준은 채권관련 자산에 투자합니다. 채권부문은 잔존만기 6개월 이하의 단기 국공채를 편입하는 구조의 비교지수를 추종하되, 운용과정에서 초과 수익전략을 병행하여 벤치마크 대비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비교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코스닥150 단기국공채 혼합지수 주1)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이 투자신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비교지수가 등장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2026년 3월 13일 기준)

하나1Q코스닥150채권혼합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없음	0.630	0.001	-	0.630	65	132	204	357	812

* 구체적인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도표의 총보수비용은 기타비용을 포함한 수치이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 투자시 부담하는 총비용 예시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및 비용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를 또는 총보수(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포함)·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2026년 06월 02일 기준)

[illegible]

[illegible]

	괴리 위험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액티브상장 지수펀드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 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 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이하 "패시브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발생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패시브 ETF가 아니라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하여 운용하는 액티브 ETF로 비교지수 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경우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변경 및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추적하는 비교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지수 구성종목 이외 종목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의 비교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지 않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비교지수 구성종목 이외의 자산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종목이 비교지수에 편입된 종목과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 하는 코스닥 기업의 경우 혹은 비교지수 내 종목을 대체할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운용전략상 필요에 의하여 일부 유가증권시장 종목을 일정 비중 이상으로 투자신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투자신탁의 상관계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곤란 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 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TF 상장폐지 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ETF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ETF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ETF를 상장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여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거래소에

	서의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개인투자자: 장내 매수 법인투자자: 장내 매수, 설정 청구	환매 방법	개인투자자: 장내 매도 법인투자자: 장내 매도, 환매 청구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 산정 방법 -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증권시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과세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경우에는 과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하나자산운용 대표전화 : 02-3771-7800, 홈페이지 : www.hanaam.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수익권의 총좌수 : 제한 없음
효력발생 (예정)일	2026년 06월 19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